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우리 도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여성가족정책관(또는 여성정책관)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안 제1조 ~ 제10조)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안 제11조)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 5.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부서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도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가족정책관(또는 여성정책관)의 명칭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10건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사회적경제과의 명칭이 소상공인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인용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서 명칭이 인용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

라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바, 금  
번 조례의 공포일에 맞추어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붙 임: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끝.